

---

# 입 법 정 보

2017-19호

---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5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6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6
4.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7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7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8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8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9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9
10.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행정안전부) .....	9
1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12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 .....	13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13
1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15
1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16
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17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17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18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18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19
2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20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20
2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0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1
25.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1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22
2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22
28.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부) .....	22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23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23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23

3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24
3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4
3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25
3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25
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26
3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6
3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7
39.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7
40.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8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28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29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29
4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31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31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33
47.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문화체육부) .....	33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4
4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35
5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35
5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36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7
5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37
54.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38
5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39
5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1
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41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42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3
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43
6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4
6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44
6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45
6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6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46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46
6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조정실장) .....	47
6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47
6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47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48
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48
7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49
7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50
7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50
7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51
7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52
77.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53
7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관리부) .....	54
79.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55
8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55
8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55
8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6
8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58
8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58
8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58
86.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58
8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59
8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59
89.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60
9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61
9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61
9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62
9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62

#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11.      • 마감일자 : 2017. 10. 23.

○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갈등 해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민간 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며, 안전과 관련없는 정부위원의 의결 참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계획 요구서 제출 시 재원확보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고,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소음 및 빛공해 발생과 경관 영향 등도 사전 평가하도록 하며,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조, 제6조)

- 1) 국립공원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넘도록(11명→13명)위원회 정수를 확대함(23명→25명)
- 2)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위촉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
- 3)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경우 소속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안전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 4) 심의의 공정성과 갈등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원계획 결정·변경 절차 개선(안 제10조, 제13조)

- 1) 재원이 확보되어 그 추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검토함으로써 공원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확보 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 2) 공원시설의 설치·운영 시 소음 및 빛공해 또는 경관에의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이를 사전 분석하도록 명시함

다. 임야 내 외래식물 식재행위 금지(안 제25조)

자연공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구역 임야 내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함

##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11.                      • 마감일자 : 2017. 10. 10.
- 영업자가 달걀의 난각 표시사항을 미표시 하거나 위·변조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11.                      • 마감일자 : 2017. 10. 23.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 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무인비행장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제3항, 별지 제120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고도와 구역을 150미터 이상의 고도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함(안 제30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승인을 위한 신청방법,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안 제312조의2, 별지 제1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의3서식 신설)
- 라. 소방·산림 등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를 위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13조의2 신설)

#### 4.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11.                      • 마감일자 : 2017. 10. 23.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의 시설 지정·구축·운영업무와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2017. 1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9호 신설)
  -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조건 충족·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6항제10호 신설)
  - 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안 제26조제8항)
-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안 제26조제9항제5호 신설)
-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 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9. 11.                      • 마감일자 : 2017. 9. 18.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포함)가 보훈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비용의 100분의 60범위에서 감면 지원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65세 이상의 독감, 폐렴구균)에 대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단서조항)

##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7. 9. 12.                      • 마감일자 : 2017. 10. 23.
-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그러나 그 기간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는 3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인수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유예 3년이 경과하면 해당기업이나 모기업의 매출액 규모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M&A시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유지기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M&A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기업 계열사 편입유예 중인 중소기업은 유예된 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12.                      • 마감일자 : 2017. 9. 18.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법 제27조 제4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 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27조 제5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12.                      • 마감일자 : 2017. 10. 23.
- 중학교의 장이 학교의 교육 목적과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를 두 학기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중학교의 장의 자유학기 지정에 관한 “현행 제44조제3항”을 일부 개정
  - 1)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을 희망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중학교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던 것을 두 학기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 3) 개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유학기의 학생 참여형 수업과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13.                      • 마감일자 : 2017. 10. 10.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0.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13.                      • 마감일자 : 2017. 10. 12.
-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 1)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10조)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그 기능에 따라 영상촬영기기와 기타 영상처리기기로 구분하고, 이 중 영상 촬영기기를 구체적인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구분함
- 2) 최근 몰래카메라 관련 피해사태가 빈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는 현행과 같이 촬영 목적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는 불빛, 소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함

\* 무인비행장치(드론)와 같이 불빛, 소리 등으로도 촬영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촬영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 게재토록 함

-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1조~제14조)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보호기준을 강화함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5조~제19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신고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 자격 및 교육 등 의무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20조~제23조)

1) 영상정보주체 등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교부, 보관, 촬영 및 이용·제공의 중단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바.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4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사.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안 제28조)

1)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안전부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권리 구제의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시정 명령 및 개선 권고(안 제30조~제3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정보처리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정 명령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 11. 통일부의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7. 9. 13.

• 마감일자 : 2017. 9. 19.

○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며,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되는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기구명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고, 인도지원과를 폐지하고 인도협력기획과를 설치(안제8조의2제1항, 제2항 등)

- 나. 통일정책실에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책협력과를 설치(안제6조제2항)
  - 기존 통일문화과의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혁신행정담당관실이 담당하도록 조정(안제2조의3제4항제27호)하고, 홍보담당관실의 통일백서, 통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책협력과에서 담당하도록 조정(안제6조제8항제9호, 제10호)
- 다.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도록 규정(안제8조제4항제24호)
- 라. 개성공단 중단 사후관리, 재가동 준비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7.10.4→’18.10.4)(안별표9)

##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제정)

- 예고일자 : 2017. 9. 13.                      • 마감일자 : 2017. 10. 23.
-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 및 이를 조교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0866호, 2011.7.21. 공포 시행)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고등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212호, 2012.1.26. 공포, 2018.1.1. 시행(예정)’ )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교육 관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하고 조교수에 포함,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포함(안 제5조 제2항,제3항)
- 나. 학칙 제 개정 보고 의무 조항 삭제(안 제6조 제2항,제3항)

## 13. 기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9. 13.                      • 마감일자 : 2017. 10. 23.

○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가맹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수품목과 관련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온라인이나 타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안 제13조의2제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는 제4항 및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함.

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의 판단기준 완화(안 제13조의3)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바, 그 “심야 영업시간대”를 종전의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종전의 ‘직전 6개월’에서 ‘직전 3개월’로 완화함.

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 변경(안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현행과 같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제한되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바, 이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의에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개정함.

라.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5호나목 및 제6호가목)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필수품목”)과 관련하여, 이를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 1곳당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및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마.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가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을 얻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안 별표 1 제6호가목 및 나목)

가맹본부가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한 특정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사. 온라인·타 유통채널 판매 정보공개 의무화(안 별표 1 제6호마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동일·유사업종 사업자에게 공급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그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1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확대, 부진사업 공개,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근거 마련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 투자심사 기준 완화 및 심사횟수 조정(안 제3조, 제4조, 부칙)
  - 1) (시도) 200억원→3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200억원 이상
  - 2) 총사업비의 80%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심사 제외

- 3) 행사성 사업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기재부) 심의·확정하는 경우 투자심사 제외
- 4) 정기심사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심사는 유지
- 나. 투자심사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안 제2조)
  - 1) 자치단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 검토
- 다. 투자심사 이후 관리강화(안 제9조의2, 부칙)
  - 1)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확대 실시
  - 2) 자치단체별 자체 점검결과 부진사업은 홈페이지 등 공개 실시
- 라. 자치단체 투자심사 ‘제도운영 컨설팅’ 실시
  - 1) 투자심사 제도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투자심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컨설팅 실시
- 마. 중앙, 지방 투자심사 위원회 근거마련(안 제9조의3)
  - 1) 위원회 구성 인원, 임기, 민간위원 위촉 비율, 소위원회 구성 근거 등
- 바. 타당성 조사관련 의뢰횟수 조정 및 제외근거 등 마련(안 제12조)
  - 1) 정기의뢰는 연 4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수시조사는 유지
  - 2) 지역전략산업, 도시재생사업 및 청사건립 등 경제성 분석 실익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간소화 근거마련

## 1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문화재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자구수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마련하였으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어 주기적 재검토를 폐지토록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등의 표지 설치 기준 등 규정 (안 제3조, 제3조의2)
- 나. 국외 반출 허가 등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 폐지(안 제63조제1호 및 제6호)

## 1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 공포, 2018.3.22. 시행)됨에 따라,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방재정보 구축범위와 운영절차를 규정하는 등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해지는 유해환경요소에 비해 명문화된 사례가 부족해 국민들이 허가대상여부를 혼란해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7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7년 2월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평균 16%)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고용기준 미달기업이 시행계획 제출 시에, 기업 내 남녀 근로

자 간 임금격차 현황과 그 개선방안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녀인력의 균형적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사항에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분석” 을 추가(안 제11조제1호나목)
-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상의 고용관리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을 추가(안 제11조제3호가목)

##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현행 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1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의무 등의 부과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 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06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06년 6.10%, ’ 11년 10.53%, ’ 16년 16.44%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성이 상위직에 오르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공공부문에 도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공무원 조직)을 제외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법 시행령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 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9. 14.                      • 마감일자 : 2017. 10. 24.

○ 가. 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현재 사업주는 동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으나, 양 제도의 취지·성격이 상이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양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실업급여 수급계좌 압류금지 금액 조정(안 제58조의3)

현재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하여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압류금지금액이 150만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으로 하한액 조차 보장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하려는 것임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안 제104조의2)

소득감소 등의 우려로 활용실적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15.      • 마감일자 : 2017. 10. 26.

○ 가.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 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 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 제약, 약품 등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명칭사용에 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함

## 2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8. 15.                      • 마감일자 : 2017. 10. 25.
- 의약품 대금지급 의무 예외적용 범위 지정(안 제44조제5항)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 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9. 15.                      • 마감일자 : 2017. 10. 25.
-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0조, 제53조 개정)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나. 지위승계 시 등록의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21조 개정)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흡수합병, 사업 전부의 양도 등으로 소멸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 2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18.                      • 마감일자 : 2017. 10. 19.
- 가. 사업 추진 방법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 근거 구체화(안 제33조제3항 신설)

법 제69조의2 각 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  
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

##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18.      • 마감일자 : 2017. 10. 30.
-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불법전매, 투기수요 등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택지의 전매제한 강화(안 제13조의3)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잔금 납부 전(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금지하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

## 25.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18.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가. 2월 조기 인사 발령을 위해 별도 정원 인정(안 제7조의4 제3항)  
퇴직 예정 교원이 퇴직 전 1개월 이내의 연수를 받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나. 전직 제한 규정 예외 적용(안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직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 특별승진(안 제16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중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도록 승진임용제한의 예외 규정

## 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18.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가.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용어 통일(안 제14조 제2항)
  - 나.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교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3항)
  - 다.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대상자에 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안 제44조 제1항 제9호)
  - 라. 교육공무원 임용 시 의사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3조 제5항)

## 2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9. 19.      • 마감일자 : 2017. 10. 30.
-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14호)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 28.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19.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가. 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별표)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 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

한사항 명확화(안 제4조)

##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9. 19.                      • 마감일자 : 2017. 10. 30.

○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  
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  
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  
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0.                      • 마감일자 : 2017. 10. 30.

○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

## 31.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9. 20.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  
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  
거나 제출토록 하고 있어 신청자 이외의 구성원에 대한 개인정보 노

출가능성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9. 20.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가. 군용항공기 정의 중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 나. 형식인증 및 감항인증을 취소 또는 효력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안 제4조제8항)
- 다. 각 군이 운영·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안 제5조의2)
- 라. 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되,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의 기존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업무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사유를 보강하고,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비행 조종사·기술사를 확보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 마.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안 제14조제2항)
- 바.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 위탁대상을 전문기관까지 확대(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33. 제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0.      • 마감일자 : 2017. 10. 16.
- 현지 상황의 급변으로 동포학생들이 한국교육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 신설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현지 교육기관 폐쇄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업 수행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

하여 한국학교 신설을 위한 운영 승인 신청 기한을 단축하여 학교 설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3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0.                      • 마감일자 : 2017. 10. 30.
- 가.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전출 입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제3항)
- 나. 국립고등학교 전출 시 수업료 반환방법 정비(안 제10조제2항)

### **3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31.
-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 시행)로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었으나, 거주불명자로 인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정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이라도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안 제15조의2)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써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신고사항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장기거주불명자 분류 근거 및 요건 신설(안 제20조7항)
  - 1) 거주불명등록한 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고 및 공고
  - 2)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다. 거주불명자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20조제8항)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작성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라.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및 교부제한 확대(안 제29조제7항, 제8항)  
이혼한 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31.
- 가. 수입신고 대상품목(안 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으로 정함
- 나. 수입검사기관(안 제19조의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영 제19조의1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목재제품·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함
  - 검사기관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산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 다.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명령을 포함함

### **3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27.

○ 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5조의2 신설)

주택가격 및 청약경쟁률 등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위축되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의 지정기준을 정함.

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3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21.

○ 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안 별표 3)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39.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31.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강화하고자 함.

나.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안 제31조의2제3항)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를 교육 이수 시기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40.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31.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8조제2항)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및 대상 등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
- 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9 제12호 및 제13호)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 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1.                      • 마감일자 : 2017. 10. 3.
-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등 배치(안 제23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및 부산권은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은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관리공무원 등을 배치하도록 함.
- 나.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 부과유예(안 제41조의2)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 완료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 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

택시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 조합, 택시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를 허용함.

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 (안 별표 1 제3호저목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을 허용함.

##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 1.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에 따라, CITES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CITES 과학기관”의 경우 식물표본집, 보존·건조·포매된 박물관용 표본, 살아있는 식물 재료를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으로 수출·입할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근거를 명확화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악기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국경이동하고자 할 때 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학대 방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높아지고 야생생물의 지역적 절멸(絶滅)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여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는 야생동물의 포획을 억제하고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시 잔인한 포획 방법의 이용 여부 및 지역개체군의 감소 여부 등도 포함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물원수족관법」 시행(‘17.5.30)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관리 대상에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비공개 정보 투명성 확대 및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강화,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과 역할 강화, 빅데이터 기반 정보관리체계 마련, 정보공개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정보’ 정의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도록 시청각물, 전자매체 등 보편적인 용어로 정비함
-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 기존의 정보 보존과 검색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관심과 유용한 정보를 분석 사전 제공하는 국민중심의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 연계 등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성실수행의무, 고의지연·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
- 라.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 법 제7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로 용어 변경함
- 마.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 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내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
  - 또한,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주기적(3년)으로 현행화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함
- 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 사.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신설(안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는 재청구 등 내부종결처리, 이미 공개된 정보, 정보공

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공공기관운영법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공단’ 까지 심의회 설치 운영 확대 및 여건에 따라 심의회 통합 운영 허용,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 객관성 강화 등 운영을 활성화함

자.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위원 확대(11명, 민간위원 2명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 제도개선 및 조사 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 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함

차.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 **44.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제주 4 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하여, 시행령 제8조의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 **4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가. 지방공기업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 신설(안 제2조)  
1) 지방공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하여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공사)과 달리 지방공사는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실정임.

2) 지방공사가 자산관리회사(AMC)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공기업(LH공사) 대비 차별사항을 시정하고 업무 위탁비용 절감,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 원칙 신설(안 제3조)

1)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이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지방공기업 경영원칙에 고객,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활동노력 조항을 신설함.

다. 지방상하수도 연체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22조)

1)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상하수도 사용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있으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 부과·징수의 근거 규정은 없음

2) 요금 체납 시 연체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연체금에 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삭제(안 제60조)

1)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공공기관 간 형평성 제고, 지방공기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규정을 삭제함.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신설(안 제65조의3)

1)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 기준의 일률적 적용으로 각종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타법 상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안전 직결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성격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을 신설함

바.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 절차 개선(안 제80조)

1) 공사와 공단 간 조직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 신청 만기일 기산 등에 혼란이 발생함.

2) 지자체장의 종전 조직 폐지 조례안 및 변경된 조직 설립·운영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기신청 만기일 기산시점을 종전 조직의 폐지 조례 및 변경 조직 설립·운영 조례 시행일로 규정함.

#### **4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가.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관세법상 필수적인 절차·특례규정 등 관세 행정 절차를 자유무역지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1항, 제16조의2, 제45조제1항)

나.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을 외투기업에서 국내 신산업 및 공항만 물류 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안 제20조제3항)

다.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해서 국내 재반출을 허용(안 제29조, 제57조)

라. 화주가 입주업체로부터 반출통고를 받았음에도 화주의 무관심·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체화화물에 대해 입주업체가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37조제2항제5호)

마. 입주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화물관리 이행체계를 갖추고 개별 물품 단위의 재고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의 분할·병합 보관 등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를 허용(안 제38조제5항)

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투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자유무역지역법에 반영(안 제11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 **47.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9. 6.                      • 마감일자 : 2017. 10. 16.

○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관광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일부장관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국무총리가 됨.

다. 차관조정회의(안 제9조)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됨.

#### **48.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1) 공간정보사업자 등록신청서 삭제(안제2조)

시행령 제4조 제3항 삭제( '15.6.1)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문 삭제

2) 주민등록표 처리 조문 정비(안제5조)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을 둘 수가 없으므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분 삭제

3)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을 신설(안 제9조)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변경 신고서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

4)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 신청 및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관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 수탁기관의 확인 의무에 관한 사항

## 4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1.
-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의제 범위 확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사업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법률 제 14087호, 2016.3.22.공포, 2017.3.22.시행)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의2)  
현행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로 한정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법 취지에 맞게 관련 자격·학력·경력을 획득한 사람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를 확대함
- 2) 인용 법령명 변경(안 제4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을 반영
- 3)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고유식별정보처리 권한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협회가 보증, 용자 및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4)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추가(안 제17조의4)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업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통계조사 업무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5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9. 29.
-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 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 명시 (안 제25조)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
- 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속 변경(안 제36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장 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5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9. 29.
-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을 대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로 변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16.6월)한 바 있음, 체계 개편 이후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정책 추진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던 반면 부처간 집행의 일관성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운영체계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6조제1항, 제18조 및 제34조 등)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 2)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 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

출권 거래소의 지정·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고자 함.

나.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 제50조 신설)

1)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하여,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자 함.

## 52.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2.

○ 시행규칙 상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최소화(안 제3조제1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17조제3항, 안 제17호제8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3조제2항, 안 별지 제14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17호서식 일부, 안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안 별지 제 1호서식 신설)

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시설·설비 기준 완화(안 별표3 개정)

## 53.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1. 2.

○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정비(시행령 제5조제1항 개정)

1) 현행 당연직 위원수가 총 12명으로 과다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부처 중심으로 당연직 위원을 7명으로 축소함

2) 평생교육진흥정책추진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대상 범위를 확대함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참석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5조제2항 신설)

1)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련 부처 차관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권한 부여(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사업과 관련된 경비보조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54.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9. 22.                      • 마감일자 : 2017. 10. 16.

○ 가. 학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같은 영 제6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찰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학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2의2호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

다.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으로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퇴학사유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대학별로 퇴학 사유가 달라 모든 퇴학 처분을 일률적으로 입학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라. 구 「대학학생정원령」의 입학 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 규정(“학

교의 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1988. 2. 1. 같은 영의 개정 시 폐지되었고, 현행 고등교육 관계법령에도 입학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가 없어 경찰대학만 해당 공고 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청장이 학사학위과정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19조제2항 삭제)

마.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과 균형상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만 학위논문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7. 5. 8.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전문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학사학위 수여 시 졸업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던 규정 대신에 학사·석사·박사학위 모두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학기·수업일수·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2017.5.8.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전단과 동일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후단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제1항)

## 5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6.

○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1.17. 개정, 2018.18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

로 하고, 수생태계 현황조사계획의 내용,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와 조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의 포함사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과 검증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내용(안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의 확인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등(안 제31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수역 상·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댐·보·저수지 등이 미치는 영향과 공공수역과 수변 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하도·하안·제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안 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이란 물질의 순환과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훼손이란 물질의 순환과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의 포함사항(안 제32조의2)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물환경 관련 연구개발계획, 투자계획 등이 포함 되도록 함.

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과 검증 및 공개방법(안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시설 사업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요청에 따라 배출량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5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6.
-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1.17. 개정, 2018.18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산정방법 및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명칭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생태유량의 대표지점 산정 및 산정방법 등(안 제29조의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산정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조사방법·선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9조의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되, 확정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부터 제14조)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변경

## 57. 장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신고제 합리화의 도입(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1) 공무원 소극행태 개선 일환으로 2016.6.22일 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에서 신고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발표하였음.

- 2) 이에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음.
- 3) 신고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제29조의4, 제29조의5)

- 1) 2017년 입법계획 수립지침에서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대상으로 지정됨.
- 2) 현행 장사법 내에서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하도록 함
- 3)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제34조)

- 1) 2001.1월 법령개정(조항 신설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년도 위원회 구성 후 2009. 8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보존묘지 및 보존 분묘의 지정대상 분묘가 이후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보존묘지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포함됨.
- 2) 이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함.
- 3) 상시적 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 5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제출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재 위헌결정(2015헌마

1206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가.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민원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 1)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로 단축
  - 2)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발행인·편집인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기사배열책임자 변경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처리기간을 당초 20에서 15일로 단축
  - 3) 폐업신고서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나. 법령 추가 정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나목의” 를 “제1항제1호의” 로 한다.

## 5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 (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 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9. 25.                      • 마감일자 : 2017. 11. 1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에 대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6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7.
- 환경부장관의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권한,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보완하기 위함

## 6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7.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시약 판매업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493호, 2016. 12. 27. 공포, 2017.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계표지 규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승하선공인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안 제155조제2항)
  - 나. 전자기관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정의 신설 (안 제2조제6호의3 신설)
  - 다. 해사노동협약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1) 의사 승무 의무 예외 규정 삭제 및 대상선박 기준 명확화(안 제84조 단서 삭제, 안 제84조제1호)
    - 2) 16세 미만 선원 고용금지 명확화 (안 제91조제1항)
  - 라. 선원 최저임금 규정 정비 및 직무상 사망의 범위 명확화(안 제59조, 제99조, 제100조)
  - 마.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
    - 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위임근거 마련(안 제115조의2 신설)
    - 2) 행정처분 위임근거 마련 (안 제124조제2항 신설)
  - 바. 합헌성 정비과제
    - 1) 조난선박 구조의무 예외 요건의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
    - 2) 수장(水葬)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안 제17조)
  - 사.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계약체결시 보험 계약시 알릴 의무 삭제(안 제42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삭제)
  - 아. 선원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안 제82조, 제172조)
  - 자. 선원법상 신고제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43조, 제112조, 제119조)
  - 차. 선원의 날 법적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 카. 시간외근로 등 허위 기재시 과태료 신설(안 제179조제2항7호)
  - 타. 인용법률 명칭 수정 등(안 제88조제2항)

## 6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6.
-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락(즉석섭취식품) 및 국·찌개(즉석조리식품) 등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액체질소가 식품에 잔류 시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시설 내 허용 영업 확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6.
-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로 국제거래 통제가 결정된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안 별표2, 3, 4 및 8)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6.
- 공익채널 선정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선정사업자가 장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심사의 일관성 유지 및 선정 신청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익채널 선정절차,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6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장)

- 예고일자 : 2017. 9. 26.                      • 마감일자 : 2017. 11. 6.
-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 1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 중 사무공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신규 진입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68. 행정안전부외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9. 29.
-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 직위의 대외적 역할 및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본부장 직무등급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6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주요 법률위반 사례인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불비 상황을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부실시공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 하고자 함.  
또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 설계·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원도급자가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단순 중개인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제9조의4, 별표3의3)

- 1)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를 정함
- 2)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추가

나. 의상자 등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근거마련(제9조의7)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의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근거를 마련

다. 자연휴양림 등 위탁 법인·단체 자격 개선(제10조)

- 1)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자격에서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된 단체”를 삭제
- 2)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이 아닌 5명 이상 단체로 명확히 규정

## 7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7.

○ 가.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9조 신설)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보호정책의 보고, 고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  
임

나. 재정제도 개선(안 제45조 개정)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도 적용하고 있으나, 소액 사건인 이용자 분쟁해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은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정

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 8 신설)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  
조정 절차,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

라. 유선포털-CP간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 부과(안 제50조제1항 7호 개  
정)

현행 규정은 이동통신사나 무선포털사업자와 콘텐츠제작자 간 거래시  
불공정 행위(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 유선포털사업자에게도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  
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 규제대상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역무’에서 ‘전기통신역무’로 확대

마.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  
항 신설)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  
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준용

## 7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안 제2조)

문체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

하는 경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위원회는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관련 전문가 12명, 국장급 공무원 3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 7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2011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여, 전국 2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양성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나, 연간 교육횟수와 인원이 적어 예산운영 및 해설사 수급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교육을 관광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 및 교육운영 근거 마련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전문교육기관에 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7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6.
- 현재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다만,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는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갖춘 공장·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경우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임.

또한, 현행 농어촌민박 등의 신고제가 신고수리 여부 등의 미통지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합민원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의 간주제 등을 도입하기 위함임

○ 가.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인 공장 등의 설립 허용(안 제22조제2항)

1) 저수지 상류지역의 예외적 허용을 제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향후 시행령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공장 등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안 제85조제3항, 안 제86조제2항~ 제3항, 안 제87조제5항~제6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안 제106조제5항)

## **7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7.

○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실질적인 임시사용 허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물류단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기준 완화(안 제37조제1항 후단)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무상 귀속·양도에 관하여 미리 해당 재산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 하지 않더라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위반 횡수별 가중처분 등(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1)

관련 법령을 위반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위반 횡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고, 영업정지 처분 항목 중 대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 반영하고자 함.

## 76.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10.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 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신고서의 양식을 정하고,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 확대 (안 제9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목·건축시설,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사업, 기타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나.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변경에 관한 신고 (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철거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신고서의 양식과 해당 시설의 철거사진, 변경 설치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신고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 다.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수수료 부과기준(안 제50조, 별표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현행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으로 정함

-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안 제5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설치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 마.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안 별표 15, 별표 16)

국토교통부 고시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고시에 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함

## 77.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9. 27.      • 마감일자 : 2017. 11. 10.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 78. 비상대비지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관리부)

• 예고일자 : 2017. 9. 28.                      • 마감일자 : 2017. 11. 7.

○ 최근 안보상황 변화로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편성,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실시의 근거를 다른 정부 업무의 평가에서와 같이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미흡기관은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

제3항)

라. 그 외에 연습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안 제 34조의2제4항)

## 79.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28.                      • 마감일자 : 2017. 11. 7.
-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 다. 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신설)
-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

## 8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9. 28.                      • 마감일자 : 2017. 11. 7.
-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정보(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세입·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 1) 공표 단위를 세항에서 세항 이하로 확대
  - 2) 공개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단축

## 8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관세청)

- 예고일자 : 2017. 9. 28.                      • 마감일자 : 2017. 10. 19.

- 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 반영
  -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세관에 휴대품통관2국 등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을 증원
    - (기구)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2과(1), 휴대품검사관(7), 조사관(1), 공항감시관(1)
    -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
- 나. 제주 강정항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 인력보강
  -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 등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보강
- 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업무분장 조정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분장 중 일부가 실제업무와 맞지 않아 일부 삭제 및 이관
- 라. 세관관서 관할구역 오류 조정
  -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안산세관 관할구역 중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 부분을 별표3(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과 일치시킴
- 마. 新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세청 일부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조정
  - 관세청의 하부조직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분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

## 8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예고일자 : 2017. 9. 28.      • 마감일자 : 2017. 11. 7.
-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주문 시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품 주문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 의무화(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에 납품수

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주문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과잉주문으로 발생하는 재고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그 수량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이 영 제2조의 ‘서면 기재사항’에 명시하여 구두발주에 따른 납품업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안 제28조제1항 및 별표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경우와 달리 이 영에는 범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방식 등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수범자가 법령 규정만 보고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다.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8조제2항)

1)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이하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이 현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i)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위반행위를 한 기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ii)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범위반 행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해 범위반행위와 과징금 상한액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8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개선(안 제58조제1항)  
건설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당초  
공사기간 말일까지로 정함

### 8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  
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  
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  
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 8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0. 19.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먼지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  
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86. 제에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0. 19.

- 효율적인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2016년 12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 로 수정함(제2조제1항)
  -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 의 규격을 “140cm×200cm” 에서 “70cm×200cm” 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 를 삭제하고자 함(별표1)
  -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 8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17.12.3.시행)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 신청할 때, 병역 사항, 주소의 변동사유 등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에 따른 개선 조치임

## 8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해

소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 16.12.2.)에 따라 법 시행(' 17.12.3.)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사진을 다시 제출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임

○ 가.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구체화(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해외체류자 등이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 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체류 신고방법, 첨부서류, 신고처리, 귀국신고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나.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 추가(안 제36조 제3항)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 배경 요건 명확하게 규정

## **89.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변경(안 제1조 개정)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내용 삭제

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 조항 삭제(안 제2~5조, 별표1 삭제)

라. 소방청장에게 지자체의 소방분야 집행현황 등에 확인 권한 부여(안 제10조)

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소방공무원 수 및 소방예산 확대노력률을 교부기준에 신규로 반영

2) 교부기준 중 특정소방대상물 수, 공유림 위험도 삭제

3) 교부기준 중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 보장 소요비용 및 소방출동비율, 소방시설 확충노력률의 반영비율 확대, 지방도로 위험도 및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반영비율 축소

## 9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8.
- 기선권현망과 연안어업(자망·통발·정치망)간 조업분쟁(어구훼손 등)을 해소하고, 낙동강 하구·주요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 신설·확대(안 별표 9)  
낙동강 하구·주요 내만의 치어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확대함.  
\* 신설(부산1, 경남4) : 부산 낙동강 하구, 경남 남해군 앵강만, 통영시 (도산면~산양읍), 창원시~고성군 내만, 창원시 진해항 / 확대(전남1) : 전남 진도~보길도

## 91. 해양수산부위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0. 19.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설에 따라 수산생물검역 및 정부합동민원실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국제기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원양산업과장이 분장하던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를 국제협력총괄 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어선법」 개정으로 불법어선지도·단속, 어선중개업 등록 및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를 어업관리단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 정원의 일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9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0. 19.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삭제)

## 9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9. 29.                      • 마감일자 : 2017. 11. 28.
-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가. 영업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조~제10조, 안 별표 1~ 별표 2, 안 별지 제 1호~제12호서식)
  -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의 시설기준을 정함
  - 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영업의 신고, 변경, 휴업·폐업·재개업 및 지위승계 등의 절차 등을 정함
  - 3) 품목제조 보고 절차 및 방법,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생산실적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 4)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및 사후관리 방법 등 마련(안 제11조~ 제13조, 안 별표 3, 안 별지서식 제13호~ 제15호서식)
- 다. 위생용품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 시간, 교육방법 등 마련(안 제14조~ 제16조)

- 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금지되는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안 별표 4)
- 마.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의 주기 및 세부 검사기준을 마련함(안 제19조, 안 별표 5)
- 바.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대상, 무상수거량, 수거 절차 및 검사의뢰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안 별표 6, 안 별지 제16호~제18호서식)
- 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6조, 안 별표 7, 안 별지 제19호~제21호서식)